

2022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

2022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11. .

조 달 청 장

1 지정대상
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」(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)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」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

2 신청서류 제출기간

회 별	제 출 기 간
제1회	2022. 01. 17. ~ 2022. 02. 04.
제2회	2022. 04. 18. ~ 2022. 05. 06.
제3회	2022. 07. 11. ~ 2022. 07. 29.
제4회	2022. 10. 04. ~ 2022. 10. 21.

※ 일반 및 혁신분야 우수제품 지정신청 및 심사일정은 동일함(동일기간에 진행)

-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: 20분 (발표 10분, 질의응답 10분)

※ 비대면심사*도 동일하게 진행

*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, e-발주시스템(<http://www.rfp.g2b.go.kr/>)을 통한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,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차(기술)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

-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,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

- 신청서류 중 ‘반드시 제출’ 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. 다만, ‘반드시 제출’ 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‘반드시 제출’ 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(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)
- 우수제품 신청서의 접수 및 반려는 (사)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서 검토

3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

-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*에 한해서 인정
* “제출”버튼을 클릭하여 “업체신청완료”된 경우
 - 신청서 양식 : 조달청 홈페이지(www.pps.go.kr>조달업무>물품구매>우수제품>서식자료)
- 신청관련 문의처 : 위탁기관 (사)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
(☎ 02-521-0014, 042-471-3006)
 - 신청서 미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, 접수완료 여부를 우수제품협회에 가급적 확인하시기 바람

□ 제출처 :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

-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

조달청 홈페이지(www.pps.go.kr>조달업무>물품구매>우수제품>우수제품지정신청)

4

지정절차 및 지정기준

- 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<조달청고시 제2021-29호(2021.8.9.)>」에 의하며,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된 규정에 의함.

5

우수제품 1차 기술심사 참고사항

- 1차 기술심사 시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및 심사 진행
- 1차 기술심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(해당업체 소속 임·직원만 참석 가능)
 -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 1부, 재직증명서 1부,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(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)

※ 우수제품 1차 비대면심사 시 참고사항

- 참석자 전원의 재직증명서 1부,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를 심사 전일까지 아래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함(해당업체 소속 임·직원만 참석 가능)

* 건설환경, 전기전자 분야 : 남민우(Tel. 042-724-7489 / Fax. 0505-489-2358)
 기계장치, 정보통신, 사무기기, 화학섬유, 지능정보, 과기의료 분야
 : 조성관(Tel. 042-724-7461 / Fax. 0505-480-1643)

- 발표에 필요한 화상카메라, 마이크, 스피커(이어폰 또는 헤드셋) 준비

- e-발주시스템(www.rfp.g2b.go.kr)>제안평가>모의평가 메뉴에서 설치 프로그램 (공통 필수설치) 설치

* e-발주시스템 이용문의 : 042-724-6118, 6184, 6467, 6414

- 해당 제품이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행위가 만연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, 독과점적 시장구조,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심각하여 우수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

붙임 : 성장유망제품 및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관한 사항 1부.
끝.

성장유망제품

- ① (대상제품) 4차산업혁명관련 8대 핵심선도산업분야*의 제품 등 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성장유망제품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

* ①초연결지능화 ②스마트 공장 ③스마트팜, ④핀테크 및 블록체인 ⑤자율주행차
⑥스마트시티 ⑦에너지신산업 ⑧드론

【성장유망제품 대상】

순 번	분 야	성 장 유 망 제 품	세 부 품 명 번 호
1	드론	드론	2513189901
2	에너지신산업	초소형 승용전기차	2510150903
3		태양광발전장치(PV)	2611160701
4		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(BIPV)	2611160702
5		지열히트펌프	4010180603
6	초연결지능화	3차원 프린터	2326150701
7		출입통제시스템	4617161901
8	스마트시티	무인교통감시장치	4617168501
9		빌딩자동제어장치	3912180101
10		주차제어장치	2410168901
11		보행자 자동인식신호기	4616152603
12	로봇	로봇용접기	2315320401
		청소로봇	2315320701
		산업용로봇	2315329801
		소방로봇	4619167201
13	기타	성장유망제품으로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 신청제품	

- ② (평가방법) 별도의 “성장유망제품 우수제품지정심사서” 로 평가

* 기존 기술·품질 평가 비율 5:5에서 6:4로 조정하고, 혁신성 평가 배점을 30점으로 확대 및 3개의 세부 지표(신규성·탁월성·완성도)로 나누어 평가

※ 성장유망제품 대상 이외의 제품은 일반심사로 진행

특허이외의 기술*이 적용된 제품

* 신제품(NEP), 신기술(NET), 연구개발제품, 혁신제품 등

①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반영 및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

- 신청서(신청(모델)규격내역, 제품설명서, 구성대비표 등)에 해당 특허를 명기하고 관련서류* 제출

* 신청 시 : 특허증, 원부(접수일 기준 1개월이내), 등록공보

1차 심사통과 시 :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보조달우수제품 특허적용여부확인서

②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미반영 및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할 경우

- 해당특허내용을 삭제(신청(모델)규격내역 미기재, 구성대비표 미제출 등) 및 우수제품 신청시스템의 ‘기타사항’에 관련서류(특허증, 원부, 등록공보) 제출

※ ①관련특허가 지정심사에 반영하여 평가받을 경우 우수제품 지정 후 사후관리(납품제품에 대한 특허적용, 특허 권리변동 등) 대상으로 인정 되고, ②미반영된 특허는 비대상으로 인정